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33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세계의 도시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산불, 폭우, 미세먼지 발생 등 자연재해에 대응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도시,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. 서울의 공간 구조를 도시공원과 함께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- 본 조례는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도시 조성 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진흥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또한, 정원

산업 및 지방정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, 지방정원 및 국가 정원 운영·관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정원산업, 지방정원 등 용어를 추가 정의(안 제2조)하였으며,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(안 제5조제3항)하였습니다. 또한 정원진흥실시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(안 제7조제2항)을 규정하였으며,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, 국가정원 신청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를 규정하였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